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서원선 · 이수연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 연구진: 서원선, 이수연.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p. ; cm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921-245-0 93330 : 비매품

장애인 고용 [障 碍 人 雇 傭]

장애인 복지 [障 碍 人 福 祉]

338.34-KDC6

362.4-DDC23

CIP2017024994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수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연구원)

발간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취업이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통한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Corrigan, 2004; Smart, 2015).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저하게 낮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보충적 수입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7; Vash & Crewe, 2004). 그리고 장애인들이 노동활동에 참여해 정규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활동 참여가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더 궁핍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노동유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달성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호주, 프랑스를 선정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진행한 서원선 부연구위원과 이수연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프랑스 사례를 조사한 프랑스 파리 12대학(Université Paris-Est Créteil)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오윤지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 수급자가 노동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초를 구축하기를 바라며, 장애인 수급자의 사례를 관리하는 서비스 체계와 다양한 노동유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황화성

↓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수행체계	3
II. 선행문헌 분석	4
1.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현황	4
2.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서비스의 한계	7
III. 장애인 대상 수급서비스 및 노동유인서비스 해외 사례	8
1. 미국	8
2. 호주	23
3. 프랑스	30
4. 시사점	45
IV. 결론 및 제언	47
1. 미시적 개선	47
2. 거시적 개선	48
참고문헌	51



▶ 표목차

〈표 II-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현황	5
〈표 II-2〉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수 현황	5
〈표 II-3〉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수 현황	5
〈표 III-1〉 미국의 연도별 시각장애 및 비시각장애에 대한 매달 SGA 금액	10
〈표 III-2〉 호주 손상표	24
〈표 III-3〉 호주 장애인지원연금액 중 21세 이상인 경우	25
〈표 III-4〉 호주 장애인지원연금액 중 21세 미만인 경우	25
〈표 III-5〉 호주 장애인지원연금 감액 기준	26
〈표 III-6〉 호주 장애인지원연금 감액 금액(과도기급여)	26
〈표 III-7〉 호주 이동수당 지급 금액	28
〈표 III-8〉 호주 센터링크 역할	30
〈표 III-9〉 프랑스 장애연금 주요 내용	31
〈표 III-10〉 프랑스 장애보충수당 주요 내용	32
〈표 III-11〉 프랑스 성인장애수당 소득 기준	33
〈표 III-12〉 프랑스 성인장애수당 주요 내용	34
〈표 III-13〉 프랑스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소득 기준	35
〈표 III-14〉 프랑스 장애아동교육수당 주요 내용	36
〈표 III-15〉 프랑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 보조금 인정 기준액	38
〈표 III-16〉 프랑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RSA 금액 기준표	38
〈표 III-17〉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의 대상 및 지급 기준	40
〈표 III-18〉 프랑스 부양할 자녀가 없는 1인 기준의 지급금액 기준(2017년 기준) ..	41
〈표 III-19〉 프랑스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수당 주요 내용	42
〈표 IV-1〉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개선방향	50



↳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3
[그림 III-1] 미국의 고용티켓 프로그램과 주정부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 ..	23
[그림 III-2] 프랑스 근로유인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	45
[그림 IV-1]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49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 및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장애인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취업이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통한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Corrigan, 2003; Smart, 2009).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저하게 낮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보충적 수입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7; Vash & Crewe, 2003).
-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이 부수적인 노동활동에 참여해 정규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활동 참여가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을 더욱더 궁핍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함.
- 이에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노동유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달성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기초생활수급 관련 국내 문헌을 조사함.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문헌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조사함.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 혹은 장애인을 위한 해외 수급 서비스를 분석함.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의 장애인 수급의 노동유인 사례를 조사함.
-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 혹은 장애인을 위한 해외 수급 서비스 제공 체계를 분석함.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의 장애인 수급과 노동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사함.

2) 연구 방법

- 국내 자료를 문헌조사 방식으로 분석함.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전달 방식 및 종류 등을 조사함.
- 해외사례를 문헌조사 방식으로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함.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혹은 장애인 급여의 노동유인 제도와 전달 체계를 조사함.
- 해외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3. 연구수행체계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Ⅱ. 선행문헌 분석

1.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현황

-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는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 해산급여: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
 - 장제급여: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것.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수가 변하고 있음.
-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임(보건복지부, 2017).

〈표 II-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현황

(단위: 만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2	135	137	142	151	153	155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3	157	155	147	139	135	133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2〉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수 현황

(단위: 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98	691	718	754	810	832	85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54	883	879	851	822	811	814

- 특히 장애인세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3〉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수 현황

(단위: 만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4	16.2	17.1	17.3	17.3	17.4	17.6	17.8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충적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대상이 679만 명(2002년), 빈곤가정을 위한 일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가 206만 가구(2002년)이며, 영국의 소득보조프로그램(Income Support, IS) 대상자가 398만 명(2003년) 수준이며, 일본의 생활



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보건복지부, 2017).

- 또한,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 혹은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보충적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와 고용티켓 프로그램(Ticket-to-Work), 영국의 장애인연금(Incapacity Benefit), 소득보조(Income Support), 고용지원수당제도(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등을 들수 있음(Jobcentre Plus, 2017;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7).
- 미국과 영국의 제도는 직업능력판정기준의 도입과 이러한 판정기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심사체제로 근로능력자를 엄격하게 판정하여 근로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급여 산정 등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 모두 주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이 복지급여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State-Fed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충적 소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직업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을 설계하여 개별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Parker & Patterson, 2012; Rehabilitation Service Administration, 2017). 영국의 경우에는 연금노동부의 산하기관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고용능력 평가, 그리고 고용서비스 연결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갖추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애인 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17).

2.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 서비스의 한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제공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주면서 자활을 촉진시키는 사업임.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창업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취업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가장 규모가 큼.
- 그러나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기능적 한계, 자활사업의 장애 접근성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노동의 기회가 현저히 부족함.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은 노동능력의 상실자로 간주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기회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임(장애인복지법, 2017).
- 또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직업재활 영역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사례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임.
- 기초수급 장애인의 노동 참여의 기회와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개선·지원(서비스 연계 체계, 노동유인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Ⅲ. 장애인대상 수급서비스 및 노동유인서비스 해외 사례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사회지출비용 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는 공공 및 사적영역(법적 필수 및 자원)의 사회지출비용에 대한 신뢰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SOEX는 35개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비용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지출비용의 변화 방향 및 총량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OECD, 2016).
- 핀란드와 프랑스의 GDP와 공공 사회지출비용 간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0%이며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지출비용이 높은 국가들임.
- 유럽의 일부 국가, 호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과거 50년 동안 사회 시스템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종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노동 경쟁력 강화와 직업재활에 많은 사회비용을 투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직업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Parker & Patterson, 2013).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호주, 프랑스를 선정하여 각 국의 장애 수급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노동유인 제도를 조사하였음.

1. 미국

1) 장애인 대상 수급서비스의 종류

(1) 수급서비스의 종류

-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급여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에서 지급하는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과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이하 ‘SSDI’)을 들 수 있음.

- SSI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로 경력 혹은 사회보장세금 납부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됨.
- SSDI는 근로기간 동안 일정의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장애로 인해 고용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임. 수급자의 장애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지급 대상이 됨.

(2) 적격성 기준

- SS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중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급 고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의료적인 기준에 의해 기능적 한계가 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장애인의 경우 한달에 1,090달러 이상, 전맹의 경우 한달에 1,820달러 이상을 벌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유급 고용으로 간주함.
- 또한 수급자의 재산은 특정 수준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수급자의 부모나 형제와 같은 직계 가족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1인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 가능한 SSI 급여액은 400달러~733달러이며 부부의 경우 1,100달러까지 지급됨.
- SSDI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노동활동에 의한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사회보장세금 납부 금액에 따라 매월 1,000달러~1,200달러 범위 내에서 SSDI 급여가 지급됨.

(3) 실질적 유급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 SSA에서 제공하는 SSI 혹은 SSDI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장애로 인해 실질적 유급 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y, 이하 ‘SGA’)에 참여할 수 없어야 함. 일반적으로 매달 특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을 SGA 활동으로 간주함. SGA로 인정되는 매월 수입의 총금액은 장애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법적 시각장애(blind)에 대해 높은 SGA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s)은 비시각(non-blind) 장애에 대해 낮은 SGA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이 두 SGA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 임금 지표(national average wage index)의 변화에 따라 조정됨.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2017년도 매달 SGA 금액은 1,950달러이며, 비시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2017년도 매달 SGA 금액은 1,170달러임. 시각장애인을 위한 SSI 혜택에는 SGA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이나 SSI에는 SGA를 적용함.

〈표 Ⅲ-1〉 미국의 연도별 시각장애 및 비시각장애에 대한 매달 SGA 금액

(단위: 년, 달러)

연도	시각	비시각
2000	1,170	700
2001	1,240	740
2002	1,300	780
2003	1,330	800
2004	1,350	810
2005	1,380	830
2006	1,450	860
2007	1,500	900
2008	1,570	940
2009	1,640	980
2010	1,640	1,000
2011	1,640	1,000
2012	1,690	1,010
2013	1,740	1,040
2014	1,800	1,070
2015	1,820	1,090
2016	1,820	1,130
2017	1,950	1,170

2)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는 특정 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및 건강 관련(health-relat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본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상이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운영하고 있음. 메디케이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 혹은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프로그램으로써 2007년 총 GDP의 2.4%를 차지했으며, 메디케어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프로그램으로써 2007년 미국 총 GDP의 3.2%를 차지했음. 두 프로그램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최초로 개설되었음(Medical News Today, 2017).

(1) 메디케이드

- 메디케이드는 자산조사(means-tested)를 통해 수급양이 결정되는 건강 및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써 수입이 낮거나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임.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만 각 주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의 적격성 기준을 정하거나 서비스의 종류·양·기간 등을 결정하며 서비스에 대한 급여율을 조정하고 주의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① 메디케이드 내용

- 각 주는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자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매칭펀드(federal matching fund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는 반드시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특정 필수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내원 병원 서비스(Inpatient hospital services)
 - 외원 병원 서비스(Outpatient hospital services)



- 출생전 케어(Prenatal care)
 - 아동을 위한 백신(Vaccines for children)
 - 내과의 서비스(Physician services)
 - 21세 혹은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Nursing facility services for persons aged 21 or older)
 - 가족 계획 서비스 및 용품(Family planning services and supplies)
 - 지방 건강 클리닉 서비스(Rural health clinic services)
 - 전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정 건강 케어 (Home health care for persons eligible for skilled-nursing services)
 - 임상검사 및 X-레이 서비스(Laboratory and x-ray services)
 - 소아 및 가정 간호 서비스(Pediatric and family nurse practitioner services)
 - 양육-조산 서비스(Nurse-midwife services)
 -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강센터 서비스 및 이동 서비스(Federally qualified health-center services and ambulatory services)
 - 21세 이하 아동을 위한 조기 및 정기적 검사, 진단, 치료 서비스(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services for children under age 21)
- 주정부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방 매칭 펀드 역시 제공받을 수 있음. 다음은 주정부에서 승인한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 서비스임.
-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
 - 클리닉 서비스(Clinic services)
 - 정신지체인을 위한 중도케어시설 서비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the mentally retarded)
 - 처방약물 및 의지 기구(Prescribed drugs and prosthetic devices)
 - 검안 서비스 및 안경(Optomtrist services and eyeglasses)
 - 21세 이하 아동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Nursing facility services for children under age 21)
 - 대중교통 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s)

- 재활 및 물리치료 서비스(Rehabilitation and physical therapy services)
-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케어(Home and community-based care to certain persons with chronic impairments)

② 메디케이드 적격성

-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적격성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나이, 임신정도, 장애정도, 자산정도, 법적 거주 여부 등과 관련된 기타 적격성 기준에 부합해야 함.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사람들이 연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며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계층들임:
 - 가족 및 부양아동 지원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 혹은 그 이하 가정의 6세 이하 아동
 -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 혹은 그 이하 가정의 임신부
 - SSI 수급자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입양 및 양육 지원 수급자
 - 노동 수입의 증가로 사회보장 현금 서비스를 상실하여 특별히 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메디케어

- 메디케어는 연방건강보험(Federal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으로써 노인 및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원 및 의료케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 본 프로그램은 2가지 주요한 파트와 2가지 부수적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파트 A와 B는 병원 및 의료보험(hospital and medical insurance), 파트 C와 D는 2가지 부수적인 파트로 유동적인 서비스와 처방약품(flexibility and prescription drugs)을 제공함.



① 메디케어 내용

- 메디케어 파트 A-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은 식사, 용품, 검사, 반사적병실(semi-private room) 등과 같은 병원에 입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파트 A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제공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과 같은 가정 건강 케어(home health care)도 지원함. 또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케어나 일부 의료보장구(예를 들어 워커, 휠체어 등) 역시 지원됨.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파트 A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기 때문에 매달 추가적인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함.
- 메디케어 파트 B-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내과방문, 외원 병원 방문, 가정 건강 케어 비용,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함. 파트 B가 지원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케인, 워커, 스쿠터, 휠체어 등과 같은 내구성 있는 의료기기(Durable medical equipment)
 - 의사 및 간호 서비스(Physician and nursing services)
 - X-레이 임상 및 진단검사 서비스(X-rays, laboratory and diagnostic tests)
 - 특정 백신(Certain vaccinations)
 - 수혈(Blood transfusions)
 - 신장투석(Renal dialysis)
 - 외원 병원 처리(Outpatient hospital procedures)
 - 일부 이동수단(Some ambulance transportation)
 - 장기 이식 후 필요한 거부반응억제 약물(Immunosuppressive drugs after organ transplants)
 - 화학치료(Chemotherapy)
 - 특정 호르몬 치료(Certain hormonal treatments)
 - 의지기구 및 안경(Prosthetic devices and eyeglasses)
- 파트 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부 보험료(2009년 기준 매달 96.40달러)

리)을 지불함과 동시에 실제 혜택을 받기 전에 연간 공제액(2009년 기준 135.00달러)을 충족해야 하며,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임.

-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플러스 초이스(Medicare + Choice) 혹은 메디케어 혜택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s)은 이용자가 본인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이용자의 의료적 상황에 더욱더 맞춰 개별 설계가 가능함. 본 프로그램은 사보험 회사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의 요구나 적격성 여부에 따라 매우 상이함.
- 메디케이드 파트 D-처방약물 설계(prescription drug plan)는 여러 사보험 회사들에 의해 제공되며 각 회사들은 서로 다른 처방약물 종류와 비용을 제시하고 있음. 파트 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보험료와 공제액을 납부해야 함. 만약 한 해에 250 ~ 2,25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처방약물의 약 75%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음.

② 메디케어 적격성

-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65세 이상인 노인,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전연령에서는 말기 신부전증(신장 투석과 혈액수혈이 필요한 경우)을 진단받은 사람이어야 함. 또한,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로서 최소 10년 정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기여를 하여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

2)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서비스의 종류

- SSI 혹은 SSDI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SSA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노동 활동을 함과 동시에 매달 지원받는 현금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음. SSA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노동유인(work incentives)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동유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손상관련 노동지출(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s, IRWE) 프로그램

- SSA는 만약 수급자가 상당한 수준의 노동(substantial work)을 하고 있다



고 결정한 경우에는 노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손상에 대한 특정 지출에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함.

- 손상과 관련된 지출의 예로는 휠체어, 특정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 특별하게 제작된 노동관련 장비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SSA는 매달 지급받고 있는 SSI 양을 고려해 소득 수입으로부터 IRWE를 제외함.

(2) 보조 및 특수상황(Subsidies and Special Conditions, SSC)

- 보조(Subsidies) 및 특별상황(Special Conditions)이란 수급자가 일하는 동안 받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SSA는 만약 수급자가 SGA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으로부터 보조금 및 특별상황에 대한 가치를 공제함.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조 및 특별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
 - 수급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가볍거나 적은 양의 업무를 맡은 경우
 - 수급자가 업무를 이수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직무지도인 혹은 멘터가 있는 경우
- SSA는 SSI 수급양을 고려할 경우 보조 및 특별상황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3) 비유입 사업 경비(Unincurred Business Expense, UBE)

- 비유입 사업 경비란 수급자에게 무료로 누군가가 제공하는 자영업 사업 지원(self-employment business support)을 말함. SSA는 수급자가 SGA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영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순수입에서 비유입 사업 경비를 공제함. 비유입 사업 경비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 그래픽 예술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에서 제공한 경우
 - 사업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친구가 무보수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이나 서비스를 비유입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합법적인 사업 경비로 인정이 된 것이어야 함. 비유입 사업 경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목적으로 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SSA는 SSI 지급양을 고려하는 경우 비유입 사업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4) 비성공적 노동 시도(Unsuccessful Work Attempt, UWA)

- 비성공적 노동 시도란 장애 수급자의 장애 혹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중단되어 장애 수급자가 노동 유지를 위해 6개월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시도했다가 중단했거나 혹은 SGA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생산량을 보인 노동활동을 말함. SSA는 SSI 지급양을 계산할 때 비성공적 노동 시도는 고려하지 않음.

(5)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지급(Continued Payment Under a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CPVRP)

- 수급자의 장애가 의학적으로 호전되어 더 이상 SSA의 장애 정의와 맞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승인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달 지급받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수급자가 그러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완결할 때 까지 지급받던 SSI나 SSDI 혜택은 유지됨.

3) SSDI에 한정된 노동유인 정책

(1) 노동시도기간(Trial Work Period, TWP)

- 노동시도기간을 통해 수급자는 최소 9개월 동안 자신의 업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수급자가 장애를 갖고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신고만한다면 수급자가 얼마의 소득을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받던 모든 장애관련 SSI와 SSDI 혜택을 받을 수 있음. 9개월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60개월 내에서 합산하여 9개월 동안 노동시도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음.



(2) 적격성 심사기간의 연장(Extended Period of Eligibility, EPE)

- 노동시도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SGA 수준의 급여를 받아 SSDI와 관련된 장애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SGA 수준 이하였을 때 받았던 매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SA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응시절차 없이 복원이 가능함. 이 복원 기간은 노동시도기간을 종료한 후 3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함. 이 기간 동안 수급자는 SGA 수준 이하의 수입과 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3) 메디케어 보장의 지속(Continuation of Medicare Coverage, CMC)

-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는 대다수의 SSDI 수급자 중 일을 하는 경우에 적어도 93개월 동안에 병원서비스(파트 1), 보충적 의료 보험(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 파트 B)과 9개월의 노동시도 기간이 종료되고 등록하면 처방 약물 보장(Prescription Drug Coverage, 파트 D)을 받을 수 있음. 수급자는 추가로 파트 A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음. 비록 현금 서비스가 일 때문에 중단되더라도,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의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 일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ork, MPDW)

- 일 때문에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메디케어 보장이 종료된 후에도, 일로 복귀한 일부 사람들 중 의료적인 장애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메디케어 보장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음. 일부 소득이 적고 제한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주정부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s)을 통해 해당 주로부터 주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기도 함. 각 주정부 보건 및 휴먼 서비스(Health and Human Services) 기관은 수급자가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하며 결정을 내림.

4) SSI에 한정된 노동유인 정책

(1) 소득수입면제(Earned Income Exclusion, EIE)

- SSA는 SSI 수급자가 매달 버는 소득의 65달러에 대해서는 계수하지 않으며 남은 소득의 1/2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추가함. 즉, SSA는 SSI 급여를 고려할 때 수급자 소득의 1/2 이하에 대해서만 계수함. SSA의 이러한 면제는 일반소득면제 20달러에 추가적으로 적용됨.
- 일반소득면제 20달러는 수급자가 받고 있는 모든 일하지 않고 취득한 소득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2) 학생 소득 수입 면제(Student Earned Income Exclusion, SEIE)

- 수급자가 22세 이하이며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SSA는 SSI 수급량을 결정하는 경우에 매달 노동을 통해 취득한 수입 중 최고 1,780달러까지는 계수하지 않음. 최고 면제 가능한 연중 금액은 7,180 달러임(이 금액은 2015년 기준이며 매년 면제 가능한 최고 금액은 생활수준과 생활비 정도에 따라서 결정됨).

(3) 시각장애 노동 경비(Blind Work Expenses, BWE)

- SSA가 수급 적격성을 심사하고 시각장애인의 SSI 수급량을 결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노동을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 조달을 위한 소득 수입에 대해서는 계수를 하지 않음. 이러한 경비는 시각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소득세 납세, 일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식사, 대중교통 이용, 맹인견 유지 경비 등을 지불하기 위한 소득 수입을 포함함.

(4) 자활 달성을 위한 계획(Plan to Achieve Self-Support, PASS)

- 자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통해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직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급자는 학교에 복학하거나, 직장 구직을 위해 특별한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혹은 자기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일정양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음. 수급자가 설



정한 구직 목표는 반드시 SSA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 혹은 중단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직업 목표여야 함.

- PASS 프로그램에 의해 저축된 금액에 대해서는 SSA가 수급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거나 수급자의 수급 상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계수하지 않음. PASS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격에 대한 기회를 높일 수 있으며 SSI 수급양도 증가시킬 수 있음.

(5) 자활에 필요한 재산(Property Essential to Self-Support, PESS)

- SSA는 신청인이 SSI 수급에 적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계수하지 않음. 예를 들어, 수급자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장비, 장치 등)은 계수하지 않으며, 수급자가 사업 혹은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소유한 자산(상품 등)을 계수하지 않음.

(6)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 SSI 수급(Special SSI Payments for People Who Work, SSPDW)

- 만약 신청인의 소득수입(자영업을 통한 총임금 혹은 순이득)이 SGA 수준인 경우에 신청인은 SSI 현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음.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반드시 SGA 수준으로 일을 하기 전에 SSI 수급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장애가 있어야하고 기타 적격성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함.

(7) 메디케이드 적격성의 지속(Continued Medicaid Eligibility, CME)

- 수급자의 소득과 더불어 기타 수입이 SSI 수급양보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도 수급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섹션 1619(a)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자격 조건과 더불어 수급자들은 일을 하고 특정 소득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함.

(8) 의료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중 섹션 1619(a) 혹은 (b)에 의해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Special Benefits for People Eligible Under Section 1619 (a) or (b) Who Enter a Medical Treatment Facility, SBP)

- 보충적 보장법(Supplemental Security law)의 섹션 1619(a)에 의해서 SSI 수급자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SSI 수급을 받을 수 있음. 섹션 1619(b)에 의해서는, 수급자는 일을 하는 동안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섹션 1619에 의해 수급자가 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메디케이드 시설, 공공 의료 혹은 정신과 시설에 있는 동안에 최고 2개월 간 SSI 현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음.

5) 고용티켓(Ticket-to-Work) 프로그램

- SSI와 SSDI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티켓 프로그램은 장애 수급자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SSA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임.
- 고용티켓 프로그램은 SSA에서 SSI나 SSDI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인 무료 프로그램으로써 수급자들이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을 달성하도록 권장하는 노동유인책 중에 하나임. 1999년에 제정된 고용티켓 및 노동장려증진에 관한법률(Ticket-to-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8 ~ 64세 국민 중 장애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함.
- 고용티켓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수급자가 직업을 찾거나 혹은 고용을 유지하고자하는 경우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취업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보장급여에 의존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수급자의 경제적인 자립과 자급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것임. 수급자들은 고용티켓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나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SSA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네트워크(Employment Network)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고용네트워크는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굿윌 산업(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자립생활센터, 직업훈련센터 등을 들 수 있음.
- 고용티켓 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공받고 있는 현금 급여와 의료보장은 유지되며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은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현금 급여 혜택은 지속되는 것임. 즉, 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즉시 상실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은 유지됨.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장애 심사를 면제받음.

6) 수급서비스와 노동유인서비스의 연계 체계 및 서비스 전달 방법

- SSI나 SSDI 수급자의 직업재활을 위해 1999년에 고용티켓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초기 2002년부터 2008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율은 저조하였음. 많은 수의 수급자들은 취업과 동시에 제공받던 현금 및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상황을 꺼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는 수급자가 급여 혜택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예를 들어, SSA는 수급자에게 주정부 재활(State-Fed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기관을 소개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주정부 재활 기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정보가 전달되며 재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례담당자는 수급자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함. 수급자들은 타 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직업훈련, 재활상담, 직무배치, 교육·의료재활, 보조공학 서비스 등 재활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음.
- 취업·구직 활동과 관련해 직업목표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사례담당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그림 Ⅲ-1] 미국의 고용티켓 프로그램과 주정부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

2. 호주

1) 장애인 대상 수급서비스의 종류

(1)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¹⁾

- 장애인지원연금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음.
 - 16세 이상 65세 이하
 - 호주 거주자²⁾
 - 소득과 자산조사의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³⁾
 - 근로를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의학적 상태
 - 직업능력평가사로부터 직업능력평가를 받은 자
 -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고, 2년 동안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자
- 장애인지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신청서와 의학 증명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받음.

1) 호주의 humanservice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리함.

2) 호주 거주자는 호주 시민(an Australian citizen), 영주권자(the Holder of permanent visa), 특수 범주의 거주민(the holder of special category visa)을 포함함(정기혜 외, 2012).

3) 호주는 다른 유렵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정기혜 외, 2012).



- 장애인지원연금제도는 손상등급(Impairment rating)을 통해서 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손상표(Impairment Tables) 척도는 15개의 영역으로 격렬한 신체 운동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기능, 정신건강 기능, 알콜, 약물 관련 기능, 뇌 기능, 의사소통 기능, 지능, 소화 및 생식기관 기능, 청력기능, 시력 기능, 억제 기능, 피부 기능, 의식 기능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지원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음. 손상은 0점에서 3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며, 30점에 가까울수록 각 영역별 활동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함. 장애인지원연금은 손상을 점수가 20점 이상일 경우, 수급자격이 될 수 있음.

〈표 Ⅲ-2〉 호주 손상표

영역
격렬한 신체 운동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기능
정신건강 기능
알콜, 약물 관련 기능
뇌 기능
의사소통 기능
지능
소화 및 생식기능
청력 기능
시력 기능
억제 기능
피부 기능
의식 기능

출처: Australian Government(2011)

- 4) 의학 증명 서류
 -병력 기록 및 보고서
 -전문 의료 기록
 -IQ 테스트 포함 심리 보고서
 -특수학교 기록
 -물리 치료 혹은 청력검사와 같은 기타 보고서
 -의학 화상(畫像) 보고서
 -신체 검사 보고서
 -보상(compensation) 및 재활 보고서
 -수술을 포함한 병원 또는 외래기록

- 장애인지원연금액은 21세 이상인 자와 21세 미만인 자로 분류하여 달리 지급되고,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3〉 호주 장애인지원연금액 중 21세 이상인 경우

(단위: 달러)

2주당 연금 금액	독신	부부 (1인 금액)	부부 (2인 금액)	부부 1인 금액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최대 기본 금액	808.30	609.30	1,218.60	808.30
최대 연금 보조금	65.90	49.70	99.40	65.90
에너지 요금 보조금	14.10	10.60	21.20	14.10
합계	888.30	669.60	1,339.20	888.30

〈표 Ⅲ-4〉 호주 장애인지원연금액 중 21세 미만인 경우

(단위: 달러)

조건	2주당 최대 금액
1인, 18세 이하, 집에 거주하는 경우	364.20
1인, 18세 이하, 혼자 사는 경우	562.20
1인, 18~20세 사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	412.80
1인, 18~20세 사이, 혼자 사는 경우	562.20
2인 중 1인, 20세인 경우	562.20

- 수급자는 장애인지원연금을 받으면서 수당 지급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주당 3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함.
 - 과거 장애인지원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주당 최대 15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은 수급자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하였음.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보장 및 기타 법규 개정안(장애인지원연금 참여 개혁)을 발의하였고, 2012년에 의회를 통과하였음.
 - 이로써 2012년 1월부터 장애인지원연금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운 손상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근로 허용시간도 늘리게 되었음.
- 장애인지원연금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지원연금제도의 금액이 상이함. 자산조사의 경우,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일부 혹은 전부를 소유한 부동산 혹은 소유물



을 포함함. 소득조사의 경우, 2주의 소득이 독신일 경우, 164달러, 부부일 경우 292달러를 기준 이상일 경우, 1달러당 연금을 감액하며,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Ⅲ-5〉 호주 장애인지원연금 감액 기준

(단위: 달러)

구성	2주 소득	연금감액 금액
독거	최대 164	없음
	164 이상	164부터 발생하는 비용에서 1달러 당 50센트 감액
부부	최대 292	없음
	292 이상	292부터 발생하는 비용에서 1달러당 40센트 감액

출처: 호주 humanservice 사이트

- 한편, 과도기급여일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과도기 급여는 직업을 잃거나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될 경우를 말함. 이 급여가 시작된 2009년 9월 19일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현 소득조사금액 보다 더 높아질 때까지 과도기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6〉 호주 장애인지원연금 감액 금액(과도기급여)

(단위: 달러)

구성	2주 소득	연금감액 금액
독거	최대 164	없음
	164 이상	164부터 발생하는 비용에서 1달러 당 40센트 감액
부부	최대 292	없음
	292 이상	292부터 발생하는 비용에서 1달러당 40센트 감액

출처: 호주 humanservice 사이트

- 또한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액을 벌어도 되는데, 2주 기준 자녀 1인당 24.60달러까지 가능함. 부부 혹은 부부가 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12.30달러까지 가능함.
- 한편, 3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장애인지원연금은 중지됨. 단,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이 책정되며,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를 지원받지 않는 노인연

금 대상자나 장애인연금대상자는 소득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또한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그리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장애인 지원연금이 중단되더라도 그 후로부터 12개월까지 연금수령인 할인 카드 (Pensioner Concession card)를 사용할 수 있음. 이 카드는 장애인연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복지카드로, 주요한 혜택은 진찰비 및 약값, 교통비, 전기세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p>연금수령인 할인 카드 주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혜택제도에 따른 약품 할인 • 진료비 무료(전문기에 따라 상이함) • Medicare Safety Net에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의료비에 대한 환급처리 • 청력관련 서비스 (청력테스트, 보청기와 청력 보호 및 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부웹사이트 참고) • 호주 우체국에서 보내는 택배비 할인 <p>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주워지는 추가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및 가스세 감면 • 부동산 및 수도요금 감면 • 대중교통비 감면 • 자동차등록 감면 • 기차이용료 감면
--

(2)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 MA)⁵⁾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유급노동, 자원봉사, 직업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을 하면서 상당한 도움이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장애인임. 단, 자동차세 면제이거나 거주지에 대중교통이 없을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음. 반면, 국가장애인보험체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⁶⁾)계획이 있거나 자동차보상체계나 이동보조체계하에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부터 차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동수당을 제공받을 수 없음(정기혜 외, 2012).

5) 호주의 humanservice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리함

6) 0세부터 65세 사이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가 보험 체계(한국장애인뉴스, 2016)



- 지급 금액은 2종류로 지급되고 있으며, 2주당 기본 94.10달러를, 최대금액 일 경우 131.60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기본 지급의 경우, 4주당 최소 32시간의 유급노동이나 훈련에 참가해야 함. 최대금액을 받을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거나 장애인지원연금, 육아수당, 뉴스타트수당 또는 청년수당과 같은 최소 금액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음.

〈표 Ⅲ-7〉 호주 이동수당 지급 금액

(단위: 달러)

구성	2주 금액	조건
기본	94.10	4주당 최소 32시간의 유급노동이나 훈련에 참가
최대	131.60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장애인지원연금, 육아수당, 뉴스타트수당, 청년 수당을 받는 경우

출처: 호주 정부 사이트

- 이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지원자가 호주 거주자이고 호주에 있어야 함.
-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센터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의사 진료기록, 신원서류를 센터링크에 제출해야 함.

2)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서비스 종류

(1) 센터링크(Centerlink)

- 센터링크는 1997년에 설립되어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복지수당을 국민에 대해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 창구로서 사회보장부 산하 독자적 정부기관으로 운영되었지만, 교육노동부와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부처별로 복지수당 예산을 개별 산정하고, 분배 창구도 다원화하는 등 2011년 연방정부에 의해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써 새롭게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로 귀속되어 운영되었음.
 - 센터링크는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약 1,000개의 센터링크 서비스 센터, 421곳의 고객서비스 센터, 26곳의 콜센터, 180개의 접근센터(Access Point), 350개의 유관 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 80여개 언어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차웅영, 2013).

- 센터링크의 역할은 수급자가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 활동 중 선택 가능한 지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임(김은하, 2006).
 - 센터링크의 직원은 수급자의 고용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대한 소개나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한 전달 등 행정적인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함.
- 한편, 수급자는 센터링크에서 진행되는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이 인터뷰는 장애인지원연금제도 수급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근로하는데의 어려움들을 극복시키는데 도움을 줌(심진예, 2012).

(2) 지원프로그램

- 장애인지원연금을 요청하기 전에 최근 3년간 최소 18개월 동안의 지원프로그램을 가입해야 하는데, 지원프로그램은 장애 고용 서비스, 구직활동,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호주 장애인기업이 있음(차웅영, 2013). 이 프로그램들은 근로유인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함.
 - 만일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18개월 미만 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재요청해야 하거나, 그 프로그램의 미효과성 입증을 통해 의무에서 배제되어야 함.

3) 수급서비스와 노동유인서비스의 연계 체계 및 서비스 전달 방법

- 호주는 연방정부에서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것을 총괄 관리하며, 연방정부의 여러 사회복지관련 부처를 대신해서 사회보장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센터링크를 1997년에 설립하였음(정기혜 외, 2012). 즉, 호주의 거의 모든 공공부조성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는 센터링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의 부처는 센터링크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센터링크는 서비스를 소비자(국민)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음.
- 센터링크는 주로 도심지역에 있으며, 도심지역 외의 경우에는 센터링크를 대신해 가족보조국(Family Assistance Offices)이 있음. 센터링크의 주 업무는 연금 심사, 고용 서비스, 가족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표 Ⅲ-8〉 호주 센터링크 역할

정부	책임
연금 심사국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연금, 미망인 연금
고용 서비스	새출발 수당, 청소년 수당, 장애인지원연금, 간호인연금, 육아급여, 특 수혜택
가족지원 사무소	가족세금혜택, 보육혜택, 출산장려금, 출산예방접종수당

-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고자 할 때, 신청자는 센터링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때 신청서와 기타 서류(진료기록과 신원서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됨. 센터링크 직원은 수급자 심사를 하고, 지원자가 적격자가 되면 지원자는 수급자의 역량강화와 근로하는데 어려운 점을 극복시켜주는 인터뷰에 참가해야 함.

3. 프랑스

1) 장애인 대상 수급서비스의 종류

(1) 수급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장애연금(Pension d'invalidité, PI)

- 장애연금은 근로를 제외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지원이 목적임.
-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제외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나 급여가 2/3 이상 감소한 경우.
 - 법적 은퇴연령이 아니어야 함(태어난 연도에 따라 60~62세로 다양함: 1951년 7월 이전 생: 60세, 1951년 7월~12월생, 1952년생: 60세 9개월, 해마다 5개월씩 증가하여 1955년생: 62세).
 - 직업활동을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12개월에 해당하는 월 1에 사회보장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직업 활동을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60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12개월 동안 적어도 2,030 × 9.67유로(2017년 최저임금)의 급여에 대한 사회 보장료를 납부한 경우.
- 장애연금은 2017년 기준 임금 월 3,269유로 한도 내에서 최대 임금을 받은 10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9〉 프랑스 장애연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급여수준
장애연금 카테고리 1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그럼에도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급여생활자, 시간제로 겨우 가능한 임금 생활자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30% (2017년 6월 기준 월 최저 282.77 유로, 최고 980.70유로)
장애연금 카테고리 2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어떤 직업 이든 종사할 수 없는 임금 생활자.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생활자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완전 불능상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이 50% (2017년 6월 기준 월 최저 282.77 유로, 최고 1,634.50 유로)
장애연금 카테고리 3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일상 생활에 동반인이 필요함.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완전불능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50% +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부가급여 (majoration pour tierce personne)가 추가지급 (2017년 6월 기준 월 최저 1,390.27 유로, 최고 2,742.00 유로)

② 장애보충수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 장애관련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최저소득 미만인 경우 보충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임.
- 대상기준: 장애연금, 전환연금, 장애 미망인 노령 연금, 장애나 오랜 직업활동에 의한 노령(은퇴)연금 수급 예정자 중 한 가지가 해당되는 동시에 소득 조건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함.
 - 1인 가구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연 8,457.76 유로(월 704.81유로), 부부 가구 14,814.38유로(월 1,234.53유로) 이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10〉 프랑스 장애보충수당 주요 내용

(단위: 유로)

가구 구성	소득	지급 금액
1인 가구	연 3,593.21(월 299.43) 이하	연 4,864.56 월 405.38
	연 3,593.21 ~ 8,457.76	8,457.76 내
	연 8,457.76 초과	해당없음
부부(또는 사실혼) 중 한 명 수급	연 9,949.82(월 829.15) 이하	연 4,864.56 월 405.38
	연 9,949.82 ~ 14,814.38	14,814.38 내
	연 14,814.38 초과	해당없음
부부(또는 사실혼) 두명 모두 수급	연 6,787.10(월 565.59)이하	연 8,027.27 월 668.93
	연 6,787.10 ~ 14,814.38	14,814.38 내
	연 14,814.38 초과	해당없음

③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es, AAH)

- 장애인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임.
- 대상 기준: 장애율 및 인구학적 기준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 함.
 - 만 20세 이상이거나 만 16~19세로 부모에게 속해있지 않아야 함.
 - 장애율이 80% 이상인 자 또는 장애율 50~79%로 장애인 권리·자율위원회(CDAPH)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유럽연합국가 시민은 제외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체류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다음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Ⅲ-11〉 프랑스 성인장애수당 소득 기준

(단위: 명, 유로)

자녀 수	연 최대 소득액	
	1인 가구	부부 가구
0	9,730.68	19,461.36
1	14,596.02	24,326.70
2	19,461.36	29,192.04
3	24,326.70	34,057.38
4	29,192.04	38,922.72

○ 내용

- 어떠한 소득도 없거나 또는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의 배우자의 급여가 월 1,616.92유로 미만인 경우 최대 월 810.89유로 수급(장애율 50~79% 또는 이상).
- 장애연금이나 은퇴연금 및 산업재해연금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또는 직업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월 810.89유로를 한도액으로 수급액 결정됨.
- 직업 활동 경우, 급여에서 810.89유로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됨.
- 입원한 경우, 60일이 초과되면 수급금액의 30%로, 즉 243.27유로로 감소됨. 단, 1일 입원비(18유로)를 지불하는 경우이거나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CDAPH가 인정하여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가구에 속한 자는 30%로 금액이 감소되지 않음.
- 장애율이 50~79%인 경우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할 시, 수급이 종료되고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 은퇴연금의 보충적 성격으로 금액 조정이 되어 계속 수급이 가능함.



〈표 Ⅲ-12〉 프랑스 성인장애수당 주요 내용

(단위: 유로)

2017년 4월 기준 성인장애수당(AAH) 월 급여액	
기준액(Taux normal)	810,89
소득보충액(Complément de ressources en complément de l'AAH)	179,85
자치적 삶을 위한 가산액(Majoration pour la vie autonome en complément de l'AAH)	105,08

- 성인장애수당의 소득보충액은 성인장애수당과 더불어 소득보충액도 수급받는 경우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소득의 지속적인 부재를 보상하기 위함임. 대상기준은 근로가 거의 완전 불가능한 경우(dans l'incapacité quasi totale de travailler)로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장애율 80% 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 근로능력 5% 미만으로 판정받은 경우
 - 성인장애수당의 기준액 전체 금액을 수급받거나 은퇴연금의 보충액, 장애연금의 보충액, 또는 산업재해수당 및 장애보충수당(ASI)을 수급받고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동안 경제활동소득이 없어야 함.
 -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여야 함.
- 가산액은 장애가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지만 직업을 찾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성인장애수당 보충적 지원금임. 2005년 7월 1일부터 자치로의 도움수당(l'aide à l'autonomie)을 대체함. 대상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성인장애수당(AAH) 기준액 전체 금액을 수급받거나 은퇴연금의 보충액, 장애연금의 보충액, 또는 산업재해수당을 수급받고 있어야 함.
 - 경제활동소득이 전혀 없어야 함.
 - 장애율 80% 미만이어야 함.
 -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주택, 일반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해야 하며, 가족수당 또는 주택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야 함.
 - 내용
 - 별도의 신청 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기금수당(Caf)에서 성인장애수당과 동시 지급.

- 의료시설 거주가 60일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되며, 퇴원 일의 다음 월 1일에 자동 지급됨.
- 성인장애수당의 소득보충액과 자치적 삶을 위한 가산액 두 가지 모두 해당사항 한 가지만 선택하여 수급 가능.

④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 이 수당은 2006년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Minimum vieillesse)이 개정된 것으로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여 혹은 무기여 사회부조임.
- 대상 기준은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고, 65세 이상이어야 함. 단, 장애인의 경우 법정은퇴연령(60~62세)자도 가능함. 이러한 경우, 장애율이 50%이면서 동시에 노동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조기퇴직한 경우에 해당함. 또한 소득기준은 연대수당 신청 기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소득을 적용함.
- 내용
 - 1인 가구 연 최대 9,638.42유로(월 803.20유로)로 9,638.42유로에서 실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
 - 부부 가구(혼인, 사실혼)의 경우 연 최대 14,963.65유로(월 1,246.97유로)로 14,963.65에서 실가구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

〈표 Ⅲ-13〉 프랑스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소득 기준

(단위: 유로)

가구 형태	연 소득	월 소득
1인 가구	9,638.42	803.20
부부 가구	14,963.65	1,246.97

⑤ 장애보상수당(Prestation de copensation du handicap, PCH)

- 장애 관련 부양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보조금임.
- 지급 대상은 성인의 경우, 60세 이전 PCH를 신청하는 경우 75세 전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60세 이후에도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직업활동을 하는 한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하며 75세 이상인 자 또는 60세 이후에 장애를 가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으로 적용됨.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장애아동교육수당(AEEH)의 수급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PCH는 수급여부를 위한 소득요건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100% 지원일 경우, 연 26,579.92유로 이하의 소득인 경우이며 80% 지원 경우, 연 26,579.92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
-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집 공사 및 개조 지원, 교통 지원, 안내견 지원비에 대하여 기간과 한도 금액 내에서의 100% 혹은 80% 지원이 이루어짐.

⑥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AEEH)

- 장애아동교육수당은 장애 아동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임.
- 지급 대상은 20세 미만이고,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 자녀가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경우에 지급함. 단, 최저임금의 55%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6세 이상인 경우 장애아동교육수당 수급자에서 탈락됨. 장애율이 50~80%인 경우, 위 기재 사항과 더불어 맞춤형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맞춤 조치 또는 활동 도우미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또는 CDAPH가 제안하는 조치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임.
- 이 수당은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 Ⅲ-14〉 프랑스 장애아동교육수당 주요 내용

(단위: 유로)

장애 정도	AEEH 기본 + AEEH 보충금액	AEEH 기본 +AEEH 보충 +한부모가정을 위한 보충금액
1	228.39	-
2	395.60	448.62
3	505.72	579.13
4	711.97	944.44
5	873.63	1,171.36
6	1,238.01	1,674.39

2)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서비스 종류

(1)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 적극적 연대급여는 고용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 빈곤 방지, 사회적 동반과 수혜자의 직업환경 향상 및 사회적 수당제도 간소화의 목적을 가지고 저소득 가구에 최저생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 적극적 연대급여에는 기본, 한부모, 경제활동청년, 젊은 부모 등 대상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본 RSA(RSA Socle)의 경우,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제한 연령은 없지만 법정은퇴연령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다른 사회수당 신청), 소득이 없거나 RSA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RSA 금액 기준표 참고), 경제활동이 없고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없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지극히 적은 자(RSA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함)가 대상임. 단, 대학생, 무보수 인턴, 육아휴직, 무급 휴직 및 안식년인 경우는 제외됨.
 - 한부모 RSA(RSA Parent isolé)의 경우, 기본 RSA 대상기준과 더불어 미혼, 이혼, 별거 또는 미망인으로 부양자녀가 있거나 법적 혼인관계 또는 신고 동거중이 아닌 경우로 임신부이며, 소득이 없거나 RSA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경제활동청년 RSA(RSA Jeune actif)의 경우, 만 18-24세 청년층으로 신청일 기점으로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전일제 혹은 3,21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RSA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젊은 부모 RSA(RSA Jeunes parents)의 경우, 출산예정이거나 신생아가 있고, 소득이 없거나 RSA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소득인정항목으로는 경제활동소득액과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금이며 RSA 금액 산정시 고려.



〈표 Ⅲ-15〉 프랑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 보조금 인정 기준액

(단위: 명, 유로)

가구 구성원 수	주택 보조금 인정 기준액
1	65,46
2	130,92
3 이상	162,01

- 정해진 기준금액 내에서 가구 구성원의 형태 및 부양할 자녀의 유무와 거주 상황 및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됨.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예를 들어, 경제활동소득이 없고 가족수당 129.86유로와 주택수당을 수급받는 2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인 경우, $1,167.43 - 162.01 - 129.86 = 853.64$ 유로의 금액을 받음.

〈표 Ⅲ-16〉 프랑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RSA 금액 기준표

(단위: 명, 유로)

자녀 수	1인	편부모	부부
0	545,48	700,46	818,22
1	818,22	933,94	981,87
2	987,87	1,167,43	1,145,51
추가 자녀당	218,19	233,48	218,19

○ 의무사항

- 가구 평균 소득액이 500유로 미만일 경우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밟거나,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PPAE)⁷⁾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를

7)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은 구직자등록 30일 후 구직센터 상담원과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PPAE)을 작성해야 함. 개인 적성, 직업능력과 지식, 개인적·가족적 상황 및 지역적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며 구직자의 성격과 희망 근무지역 및 희망 임금액 등 기입. 구직자 등록 6개월 후, 대중교통으로 자택과 최대 1시간 거리 또는 30km 이내의 일자리가 제안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수급자격 박탈됨
 - ① 구직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태만
 - ② 도제 및 실습 근무 제안 거부
 - ③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PPAE)에 작성된 직업훈련이수 거부

- 두 번 이상 거부할 수 없음.
- 부부인 경우 배우자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지님.
- 의무사항을 아무 근거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감면될 수 있음.
- 단,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PPAE)에 전일제 근무 희망 작성시 제안된 일자리가 시간제 근무인 경우, 제안된 일자리가 해당 지역의 같은 분야 직업의 평균 임금액 미만인 경우, 일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자리 제안을 따를 의무가 없음.
- 권리사항
 - 즉시 재취업 준비가 된 경우 고용센터(Pôle emploi)로 안내받으며 지정받은 통합전담원과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PPAE) 작성.
 -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즉시 재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센터(Services sociaux)나 사회편입담당시설(Organisme d'insertion)로 안내받음. 단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짐.
 - 각각 통합전담원(référent unique)⁸⁾이 지정되어 건강, 주거 및 아동돌봄 등 필요한 사회적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감으로써 재취업 환경을 모색함.
- 적극적 연대급여(RSA)는 성인장애수당(AAH)과 동시 수급 가능
 - 단, 성인장애수당(AAH)의 금액에 따라 적극적 연대급여(RSA) 금액 감면됨.
 -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가 '장애인근로자자격인정(Reconnaissance de la qualité de travailleur handicapé, RQTH)'을 얻게 되면 고용시장진입을 지원받음.

㉞ 고용진입 행동거부
 ㉟ 상담일 또는 의사의 진단일 출석 거부
 ㊱ 허위 신고
 ㊲ PPAE 작성거부
 ㊳ PPAE에 작성한 직업군 탐색을 위한 과정 거부
 ㊴ 합당한 일자리 제언(offre raisonnable d'emploi)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두 번 거부한 경우

8) 통합전담원: 해당지역의 모든 사회서비스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수급자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 도움 요청을 위하여 직접 해당 시설에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전담원만을 통하여 해결가능하며 고용센터 상담원, 직업편입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있음.



(2)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 PA)

-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과 빈곤 방지, 경제활동 및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임.
-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Ⅲ-17〉 프랑스 경제활동 추가수당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대상	지급 기준
임금근로자	-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근로자, 즉 소득이 최저임금(Smic)의 1.3배인 월 1,500유로(1인 가구 기준) 미만 ⁹⁾ .
1인 이상 가구	- 무자녀인 부부가구의 경우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중인 한부모인 경우 가구 소득 2,200유로 미만 - 두 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2,900유로 미만
사업자	- 상업 종사자: 연 82,200유로 - 자유직(건축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분야 직종) - 장인(artisan): 32,900유로 미만의 소득
대학생, 도제생 및 견습생	-최소 3개월 동안 월 907.19유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하며 위 대상 기준에 부합한 자.

○ 지급금액

- 금액산정식 = (기준액¹⁰⁾ + 경제활동소득의 62% + 상여금¹¹⁾) - 가구소득(경제활동소득+사회수당)
- 부양할 자녀가 없는 1인 기준의 지급금액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9)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당(실업수당, 의료보험수당, 가족수당, 부양연금, 주택수당) 또한 소득으로 인정됨

10) 기준액(Montant forfaitaire): 매년 재평가 실시, 2017년 4월 기준으로 526,25유로임.

11) 상여금(Bonification): 최저임금(smic)의 0.5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상여금이 추가되며 경제활동소득이 최저임금의 0.8배인 경우 최대금액인 67유로가 적용됨.

〈표 Ⅲ-18〉 프랑스 부양할 자녀가 없는 1인 기준의 지급금액 기준(2017년 기준)

(단위: 유로)

최저임금 대비 소득액	지급액
0.25배	185
0.5배	246
0.6배	222
0.7배	199
0.75배	188
0.8배	176
0.9배	136
최저임금 1,144유로 (세후)	132
1.1배	105
1.2배	60
1.3배	15
1.4배	-

- 가족구성원과 부양자녀의 유무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며 가산액(Majoration)이라 칭함.
- 최소선(Seuil minimal): 경제활동 추가수당 지급액이 15유로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소득 인정 항목
 - 경제활동소득(사업자의 경우 최근 1분기 소득액으로 산정됨. 즉 소득이 있고 3개월 이후 경제활동 추가수당 신청 가능)
 - 토지 및 자본에 대한 소득
 - 실업수당(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 산업재해연금(rente d'accident du travail)
- 사회수당 인정 항목
 -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및 주택보조수당(Allocations du logement).
 - 무료로 거주하거나 집주인일 경우 현물수당으로 다음 기준표를 바탕으로 소득으로 책정함.



〈표 Ⅲ-19〉 프랑스 가족수당 및 주택보조수당 주요 내용

(단위: 인 유로)

가구당 인원 수	책정 금액
1	63.15
2	126.30
3 이상	156.30

- 경제활동 추가수당(PA)과 성인장애수당(AAH) 또는 경제활동 추가수당(PA)과 장애연금(PI) 동시 수급 가능
- 성인장애수당(AAH) 또는 장애연금(PI)을 수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일반사업장, 장애인맞춤사업장, 또는 자영업 등)인 경우 신청가능.
- 경제활동소득이 280유로(최저임금의 약 25% 해당) 이상인 경우 성인장애수당(AAH) 또는 장애연금(PI)을 소득으로 인정함.
- 경제활동소득이 280유로 미만인 자의 경우 경제활동 추가수당 산정에 고려되지 않음. 예를 들어, 시간제 근무로 월 570유로(세전)의 경제활동소득이 있고 630유로의 성인장애수당을 수급받는 경우 경제활동 추가수당으로 약 135유로 수급자격이 주어짐. 즉, 경제활동소득으로 1,200유로가 산정되어 위의 1인 가구 기준표에서 최저임금의 약 0.9배에 해당함.
- 경제활동 추가수당(PA)은 성인장애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인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 급여액 산정에 해당사항 없음.
- 장애연금의 경우, 부부 중 1인만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장애연금은 사회수당으로 고려되어 경제활동 추가수당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¹²⁾.
- 경제활동 추가수당과 성인장애수당(또는 장애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 3개월마다 소득신고를 각각 두 번(경제활동 추가수당과 성인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해야 함.

12) 출처: <http://www.faire-face.fr/2016/12/22/prime-activite-pension-invalidite-cat/>

(3) 성인장애수당과 경제활동소득의 동시 수급 시스템

-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인장애수당을 겸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장과 근로지원서비스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일반 사업장 근무
 - 첫 6개월 동안 AAH와 액수에 상관없이 전체 임금액과 겸할 수 있음.
 - 7개월부터 임금액이 부분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어 산정됨.
 - 산정식 = 최저임금(151.67시간, 세전 1480,27유로)의 30% (444.08유로) 미만의 월 소득 80% + 최저임금 30% 이상의 월 소득 (월 소득 -444,08유로) 40%
- 근로지원서비스시설(Établissement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 ESAT)
 - 근로지원서비스시설(ESAT)에서 지급되는 임금과 성인장애수당(AAH)의 합이 다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동시 수급 가능(주당 법적 시간(35시간) 근무 하에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55%에서 110%까지 다양하게 지급될 수 있음). 1인 가구: 최저임금 100%, 1,480.27유로(세전), 부부: 최저임금 130%, 1,924.35유로(세전),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부부: 최저임금 145%, 2,146.39유로(세전)임.

(4) 장애연금과 경제활동소득의 동시 수급 시스템

- 장애연금과 경제활동소득이 직업활동정지 이전 1년간 1분기 평균소득액이 6개월 연속으로 초과할 경우 장애연금지급이 중지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판단 하에 일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경우 3개월 마다 수급 자격 여부가 검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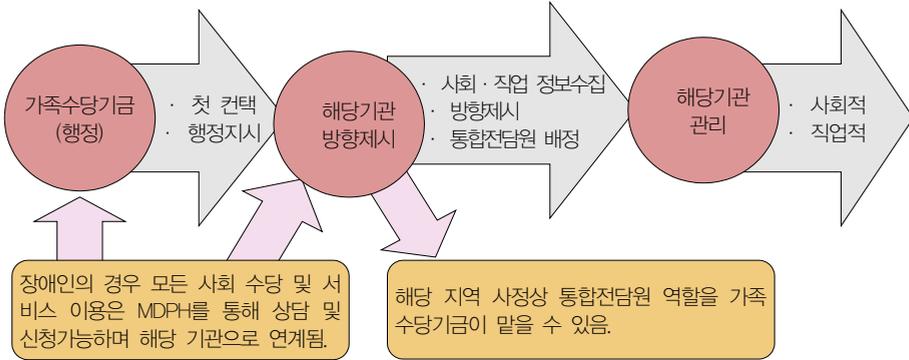
3) 수급 서비스와 노동유인서비스의 연계 체계 및 서비스 전달 방법

- 경제활동 추가수당(PA)은 적극적 연대급여(RSA)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취업 추가수당(Prime pour l'emploi,PPE)과 RSA취업가산급여(RSA d'activité)가 통합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RSA취업가산급여가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자가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보충적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사회적 원조 성격을 가졌던 반면, 경제활동 추가수당(PA)은 사회적 원조와 경제활동을 통한 임금 사이에 위치하여 중간적 성격을 표방하는 직업활동촉진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변모됨.

- RSA라는 명칭이 빈곤층 대상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RSA취업가산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신청 자격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하여 개정과정에서 RSA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경제활동 추가수당으로 통합 및 재명명함으로써 사회원조 성격 수당의 이미지를 차단하여 신청 대상자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임.
- 장애연금(PI)을 제외한 적극적 연대급여(RSA), 경제활동 추가수당(PA)과 성인장애수당(AAH) 및 경제활동소득 동시 수급 시스템 모두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에서 지급되고 관리되며(장애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및 관리), 적극적 연대급여(RSA)에서의 행정부분은 가족수당기금(CAF)에, 그리고 근로담당은 고용센터 및 사회시설의 통합 전담원예, 그리고 장애인근로자격인정(RQTH)이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네트워크(Cap Emploi) 서비스로 연계되어 전문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받음. 각종 수당은 장애인 관련 사회 서비스 연계가 모두 이뤄지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MDPH)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가족수당기금(CAF)으로부터 적극적 연대급여(RSA)를 수급받는 경우 경제활동 추가수당(PA)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재시작하는 경우 신청 해야 함. 반면, RSA를 수급받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기금(CAF)에 별도로 신청함.
- 매 분기 마다 소득액 및 본인 및 가족 변경사항은 가족수당기금(CAF)에 직접 방문,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적극적 연대급여(RSA), 경제활동 추가수당(PA)과 성인장애수당(AAH)에 각각 따로 신고하여야 함(동시수급경우에도 해당). 즉, 3개월 마다 수급자격조건이 결정됨.



[그림 III-2] 프랑스 근로유인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

4. 시사점

- 공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수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도움 인프라(건강, 주거복지 등)가 잘 연계되어 있음.
- 장애인이 재취업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며 최소한 재취업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수급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재취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화된 관리 체계를 이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정부 직업재활 기관에서 수급 장애인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센터링에서 수급관리를 하면서 재취업 유도를 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도 지정된 통합전담원이 수급자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으로 신속히 유도하고 있음.
- 체계적인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서비스 목록과 직업목표 등을 기록한 계획서를 설계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직업재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통합전담원과 함께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을 작성하여 재취업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구체적인 고용 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임시적 실업 해결 방편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적성을 파악하여 실습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며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실업 해결 방편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이 수급을 받으면서도 취업 기회를 높여 구직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즉, 수입 유무에 따라 수급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수입을 보장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성인장애수당(AAH)이나 장애연금(PT)을 수급받는 중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0% 동시 수급이 가능한 반면 소득인정액을 인상시켜 수급 금액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저항 완화와 경제활동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경제활동 추가수당(PA)에 대하여,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의 경우 경제활동소득액이 280유로 이상일 때 성인장애수당 급여액을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활동 추가수당(PA) 상여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PA 급여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성인장애수당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지원 연금이 감액됨. 독거일 경우, 164달러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감액을 하지 않는 반면, 그 이상일 경우, 164달러부터 발생하는 비용에서 달러당 50센트씩 감액하고 있음.
- 이처럼 세 나라는 장애인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하면서, 근로유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근로를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차액을 지원해 주거나 다른 종류의 수당이 주어지는 등의 제도가 존재하여 장애인들이 생활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있음. 이는 노동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큼.

IV. 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정책을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미시적 개선과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포함한 거시적 개선으로 분류하여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1. 미시적 개선

- 첫째, 장애인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입을 인정하여 수급액을 박탈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SSI 혹은 SSDI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SSA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노동 활동을 함과 동시에 매달 지원받는 현금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유지하고 있음. 손상관련 노동지출(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s, IRWE)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수급자가 상당한 수준의 노동(substantial work)을 하고 있는 경우 노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손상에 대한 특정 지출(휠체어, 특정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 특별하게 제작된 노동관련 장비 등)에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후주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장애인 수급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유인 서비스가 필요함. 노동시도기간, 메디케어 보장의 지속(Continuation of Medicare Coverage), 소득수입면제(Earned Income Exclusion), 학생 소득 수입 면제(Student Earned Income Exclusion)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유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노동시도기간과 같이 장애인 수급자가 수급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기간 노동현장으로부터 단절된 장애인의 경우 노동활동을 시작하여 적응하는데 일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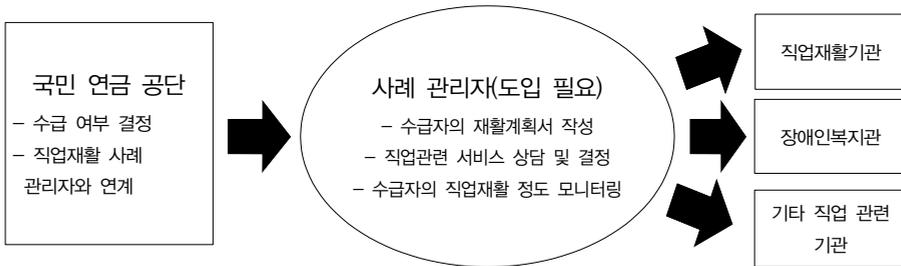
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 넷째, 구체적인 직업재활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자활 달성을 위한 계획(Plan to Achieve Self-Support, PASS)을 통해 장애인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직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직업재활 계획 단계부터 유인책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수급자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장애인 수급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동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노동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SSI나 SSDI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주정부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직업재활 서비스 적격성 절차와 과정도 간결해 수급자에게 신속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노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여 수급자가 노동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함.

2. 거시적 개선

- 첫째, 장애인 수급자를 위해 노동유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장애인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급 서비스와 노동유인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전달 체계가 필요함. 수급을 받는 장애인에게 단순 정보 전달만으로는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없으며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포함한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SSA는 장애인 수급자에게 주정부 재활(State-Fed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기관을 소개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사례를 연계받은 주정부 직업재활 담당자는 장애인 수급자가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장애인 수급자의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사례관리자의 주요한 역할은 수급자의 재활계획서 작성, 직업관련 서비스의 상담 및 결정, 수급자의 직업재활 정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임.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이 결정된 장애인의 사례를 연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사례관리 체계

- 둘째, 직업재활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업재활 계획서는 직업목표, 달성 기간, 달성에 필요한 소요 경비 및 서비스의 종류 등 아주 명료하고 세세하게 작성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서를 통해 장애인 수급자의 직업재활 과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장애인 수급자가 노동유인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고용티켓 및 노동장려증진에 관한 법률(Ticket-to-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법적 규정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Ⅳ-1〉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개선방향

구분	세부내용
미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활동과 수급혜택 동시 인정- 다양한 노동유인 프로그램 필요- 적극적 노동시도기간 적용- 직업재활 계획 단계 지원- 직업재활로 자동 연계
거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사례관리 필요- 구체적인 노동유인 계획 작성- 직접적인 관련 법률 근거 마련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은하(2006).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169-193.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심진예(2012). 장애인지원연금(DSP) 수급자 인정.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 도입. 세계장애동향.
- 장애인복지법(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용영(2013). 호주 기초노령연금 정책. 대한민국의지사협의회.
- 한국장애인뉴스(2016.7.21.) “사람 중심의 호주 ‘국가장애보험계획’ NDIS”.
- Australian Government(2011). Social security determination.
- Corrigan, P. W. (2004). Target-specific stigma change: A strategy for impacting mental illness stigma.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8(2), 113-123. Smart, 2015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7). Customer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disability-support-pension>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17). Work incentive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department-for-work-pension...>
- Jobcentre Plus (2017).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contact-jobcentre-plus>
- Mathieu T.(dir.), Auffret M.-L., Labarte J., Malgras A., Morais-Rebello S., Sanson E.(2017). “RSA: Le role des caf, de l'accès aux droits à l'insertion professionnelle”, *Recherches- actions en protection sociale*, EN3S, n° 55.
- Medical News Today(2017). What is Medicare and Medicaid? retrived



- from www.medicalnewstoday.com/info/medicare-medicaid#
- Nadia Okbani(2013). “Les travailleurs pauvres face au RSA activité, un rendez-vous manqué?”,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2013.4, n° 4, p.34-55.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1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retrived from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 Parker, R., & Patterson, J. (2013).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Austin, TX: Pro-ed, Jobcentre Plus, 2017
-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2017). State-federal VR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sers/rsas/index.html>
- Smart, J. (2015). *Disability, society, and the individuals*. Austin, TX: Pro-ed.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17). Social security online: Work incentives, retrieved from <https://www.ssa.gov/disabilityresearch/wi/generalinfo.htm>
- Vash, C. L. & Crewe, N. M. (2004). *Psychology of Disability* (2nd ed.) NewYork: Springer.
- Faire face: <http://www.faire-face.fr/2016/12/22/prime-activite-pension-invalidite-caf/>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발 행 일 : 2017년 9월

발 행 인 : 황화성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 · 인쇄 : (사)다움복지회인쇄사업부

ISBN 978-89-6921-245-0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